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5. 7 (토)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5. 23(월)
- 다. 상정일자 : 2005. 9. 23(금),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평창군의회 의결(2005.3.24)을 거쳐 공포(2005.4.13)된 『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음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에서 정한 한시기구요건과 직급기준 위반
- 당초 조례개정취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명칭 변경
- 부칙에 규정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각각 종전의 기구로 흡수 조정함.
 - 산업경제팀은 기획감사실로 흡수
 - 사회복지팀은 환경복지과로 흡수
 - 상하수도팀은 지역도시과로 흡수

4. 검 토 결 과

- 본 조례안은 평창군수로부터 2005. 2. 28(월) 제출되어 2005. 3.24(목) 제12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하였고, 평창군은 즉시 강원도에 공포예정을 보고하여

- 2005. 4. 08(금) 강원도로부터 평창군수에게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으나 구조조정이후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통제함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 2005. 4. 13(수) 재의요구를 하지않고 조례를 공포하여 2005. 4. 19(화) 강원도지사가 조례안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음
- 이에 따라 피고지정에 평창군의회가 되는 점, 자치단체간의 기구조례의 형평성, 중앙부처와 강원도 평창군간 우호적 관계를 고려하고
 -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팀제 도입과 총액인건비 제도 측면의 지방분권형 조직개편이 평창군의 조직 개편 계획과 부합된다는 판단하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재개정하는 것은 당초의 명분과 의욕에는 반한다고 생각되나 행정질서를 위해 부득이한 판단이라 봄
- 따라서 강원도의 시정지시에 순응하여 개정 조례에 명시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산업경제팀을 기획감사실로, 사회복지팀을 환경복지과로, 상하수도팀을 지역도시과로 재편입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 헌법,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관한 입법근거, 한계, 제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 자치 조직권은 지방자치의 제도가 가지는 뜻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해서 스스로 조직, 즉 기관의 상시 운영 등을 정하거나 또한 그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을 임면하는 등 권능을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 중앙집권적인 현 행정체계상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며 지방분권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선 계획하였던 새로운 조직의 틀을 조속이 재구상하여 중앙이 시행예정인 시범적 기구운영 등을 적극 검토, 건의·협의를 통해 당초 입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第15條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5.2.11 대통령령 18701호]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⑥삭제 <2004.12.18>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8.31>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5.2.11 대통령령 18701호]

[별표 4] <개정 1999.12.31, 2001.12.19, 2003.12.30, 2004.12.18>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인구3만이상 5만미만은 10개이내의 실과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실장(과장급, 과장, 담당관, 읍장, 면장, 동장은 5급으로 규정되어 있음